

가톨릭 성당건축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개선방안*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본당을 중심으로 -

The Current Condition and Improvement Plan of Accessibility for the Disabled in the Catholic Churches

- Focused on the Parish Churches Located in Yuseong-Gu, Daejeon Metropolitan City -

Author 박상현 Park, Sang-Hyun / 정회원, 국립 한밭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Abstract This study is regarding the accessibility for the disabled in the catholic churches. The purpose is to check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accessibility for the disabled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targeted at 10 churches located in Yuseong-gu, Daejeon metropolitan city. Especially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obligations and recommendations specified in the accessibility enhancement law for the disabled was performed through field investigation.

Firstly, the accessibility for the disabled of each church was evaluated qualitatively as well as quantitatively. And then sequential improvement plans divided into three stages were suggested. Above all, the parish, management authority of catholic churches should establish medium and long-term plans besides legal standards. Even though the scope of this research was limited to catholic churches of certain are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help investigation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accessibility for the disabled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in other catholic churches.

Keywords 가톨릭 성당,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개선방안
Catholic Church, The Disabled, Accessibility, Current Condition, Improvement Pla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에서 공공건축물로의 접근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종교시설 중 하나로 본 연구의 대상인 가톨릭 성당건축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곳을 찾는 이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재의 문제적 상황들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이나 과거로부터 전해온 가톨릭 성당건축의 정형성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제도·정책적 측면에서는 장애인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한 종교시설의 편의시설이 가톨릭 성당에서 실제로 이뤄지는 다양한 전례 및 행위¹⁾에 대한 올바른 이해²⁾ 없이 설치됨

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인 건물로의 접근이나 능동적인 종교 활동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³⁾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⁴⁾에 맞게 장애인이 성당의 내·외부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 접근하게 함은 물론 종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

- 1) 신자들의 행위는 크게 신학적인 측면과 건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건축적인 측면으로는 집회공간이 지니는 시정각적인 요인에 따라서 신자들의 집중도, 참여의식, 공동체 의식, 그리고 엄숙하거나 자유스러운 느낌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성당건축 미사공간의 평면유형에 관한 연구, 한만균·이호진,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1990, p.72
- 2) 성당은 신자가 종교전례에 참여하기 위하여 집합하는 회당이라는 물적 기능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신자를 지체로 한, 그리스도 신비체로 신의 성역의 집이라는 정신적 기능을 물적 회당을 통하여 구상화하는 장소인 것이다. 한국 천주교 성당건축의 변천과정과 토착화에 관한 연구, 김정신, 대한건축학회지, 1984년 2월, p.72
- 3) 휠체어사용자의 성당건물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호근·강병근,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2권 제2호, 2002년 10월 26일, p.103
-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지침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이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하는 인공제도이다.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밭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기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자 역시 가톨릭 신자로서 이제까지 여러 성당들을 경험하면서 느껴왔던 문제점들을 본 연구를 위한 실제 조사를 통해 깊이 있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출발한 연구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관련 연구들을 근간으로 하되 보다 실제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여 기존 성당들의 리모델링이나 증·개축 시 또는 신축 시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공간적 특수성을 감안한 현실적 문제 파악과 함께 향후 제도적 보완책 역시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 성당건축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지만큼 철저한 현장조사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했다.

첫째, 현재 대전광역시 소재하는 총 46개 성당 중 연구자의 직장(학교)과 주거지가 속해있는 유성구에 소재하는 11개의 성당 중 현재 신축을 위해 철거 상태인 반석동 성당을 제외한 10개소를 본 연구의 대상범위로 한정하였다.

둘째, 천주교 대전교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성당에 대한 기본적 사항 등을 사전 숙지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것임을 감안하여 준공연도가 1998년을 기준으로 어떠한지, 연면적이 500m² 이상인지에 유념하면서 답사⁵⁾계획을 수립하였다.

셋째, 장애인 편의증진법에서 제시한 종교시설의 편의시설 기준에 근거하여 조사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직접 현장답사를 통하여 그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하였고 추가적인 사항들은 관련자⁶⁾ 면담 및 유·무선상의 교신을 통하여 보완해 나갈 수 있었다.

끝으로, 총 10개의 조사대상 성당을 1998년 이전 준공작과 이후 준공작으로 구분하여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별로 그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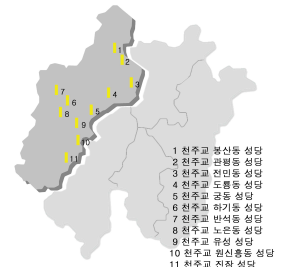
2. 성당건축과 장애인 편의시설

2.1. 대전교구 내 유성구 소재 본당 현황

5) 답사는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차는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고 2차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현황 파악에 더욱 집중하였다.
6) 특히 천주교 대전교구 관리국, 각 성당 주임신부님 및 수녀님, 사무행정직원, 김충열 건축사, 최영재 건축사 등이 도움을 주셨다.

2014년 4월 현재 천주교 대전교구 내 유성구에 소재하고 있는 성당은 모두 11개에 이른다. 그것을 가나다 순

으로 열거하면, 관평동성당, 궁동성당, 노은동성당, 도룡동성당, 반석동성당, 봉산동성당, 유성성당, 원신흥동성당, 전민동성당, 진잠성당, 하기동성당이다. 유성구⁷⁾는 대전광역시를 구성하는 5개 구 중 하나로 남북으로 긴 형상



과 함께 북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서로는 공주시, 그리고 남으로는 계룡시 등과 인접해 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성은 대전과 인접해 있는 일개 군이었고 유성성당이 1979년 준공되어 가장 오래된 유성구 소재 성당이 되었다. 그 후 연구단지 및 엑스포 등을 계기로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으로 새로운 도시형 성당⁸⁾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특히 2000년 이후로는 대덕 테크노밸리, 노은지구에 이어 최근에는 도안신도시 및 학하지구로 신축 성당들이 생겨나고 있다.⁹⁾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일단 부지를 먼저 확보한 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조립식 가건물 형식으로 성당을 축조한 후 수 년이 지나 재정적 자립도가 안정되면 제대로의 모습을 갖춘 성당으로 재축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2.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및 권장사항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¹⁰⁾ 시행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이 정해졌다. 그 중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과 같은 종교시설에서의 기준을 살펴보면 매개시설에서는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의 항목들이 의무사항으로 지정되었으며, 내부시설 중 출입구 또한 의무사항으로 지정되었다. 내부시설의 복도와 계단

7) 1989년 1월1일 유성군과 대덕군이 함께 대전에 통합되었다.
8) 특히 70년대 이후 건축들에 있어서는 도시형 성당들이 대거 건축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의 지역성당건축이 기존의 성당건축과는 다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서 가톨릭 성당의 공공활용성에 관한 연구, 이준혁·임창복,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0, p.2
9) 현재 대전 유성구 덕평동 한밭대학교 인근에 덕평동성당이 신축 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1997년에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고령자를 비롯한 이동약자에게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령자를 위한 교회건축 편의시설 개선방안, 이종희·김주연,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10년 12월, p.209

<표 1> 가톨릭 대전교구 내 유성구 소재 본당 목록 및 특이사항

유성 성당	
주소	대전 유성구 봉명동 568-1
설립일자	1965년 11월 25일, 1979년 성당 준공
규모	성당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812m ²
특이사항	구시가지 모서리 부지, 낙후된 시설
도룡동 성당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0-55
설립일자	1986년 1월 1일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2,099m ²
특이사항	고급주택가 경사지대지, 옥상마당
궁동 성당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392-2
설립일자	1994년 8월 11일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2,354m ²
특이사항	대학가 협소한 대지로 지하공간 큼
전민동 성당	
주소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7-1
설립일자	1997년 1월 29일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3,290m ²
특이사항	규모도 크고 활성화 되어 있음
봉산동 성당	
주소	대전 유성구 봉산동 938-1
설립일자	1999년 1월 26일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1,715m ²
특이사항	가로에 면한 성당 카페가 인상적
관평동 성당	
주소	대전 유성구 관평동 741
설립일자	2006년 1월 10일
규모	지상2층, 연면적:798m ²
특이사항	좋은 입지조건과 대비되는 가건물
노은동 성당	
주소	대전 유성구 노은동 499-1
설립일자	2006년 1월 16일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2,292m ²
특이사항	뒷산과 전면도로에 면한 선형 대지
진잠 성당	
주소	대전 유성구 교촌동 642-1
설립일자	2007년 5월 9일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1,936m ²
특이사항	다세대 및 일반 주거밀집지역
하기동 성당	
주소	대전 유성구 하기동 535-1
설립일자	2009년 6월 22일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1,400m ²
특이사항	협소한 대지 내의 단일건물 형식
원신흥동 성당	
주소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562-1
설립일자	2011년 1월 12일
규모	지상2층, 연면적:738m ²
특이사항	진잠천변의 임시 가건물 형식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의 화장실과 기타시설의 관람석과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에 대해서는 권장사항 기준이 요구된다.

매개시설은 설치기준에 있어 의무사항에 포함되는데, 먼저 주출입구 접근로에 대해 유효폭과 활동공간과 함께 기울기, 경계, 접근로의 재질과 마감, 보행 장애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시에는 설치 장소와 주차 공간, 유도·안내표시와 더불어 주출입구 높이 차를 없애기 위해 턱을 낮추고 휠체어리프트나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내부시설인 출입구 역시 유효폭 및 활동공간과 더불어 문의 형태나 손잡이를 고려해야 한다.

<표 2>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른 종교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편의시설	기준
종교시설 (500m ² 이상)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의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의무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의무
	내부시설	출입구(문)	의무
		복도	권장
		계단 또는 승강기	권장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권장
		소변기	권장
		세면대	권장
기타시설	관람석 열람석	권장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권장	

복도와 계단, 승강기와 같은 내부시설은 설치기준에 있어 권장사항에 포함되는데, 복도 계획 시 유효폭, 바닥, 손잡이, 보행 장애물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계단에 대해 형태, 유효폭, 디딤판과 쉘면,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재질과 마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승강기 또한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크기, 조작설비 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내의 관람석에 있어서 설치장소, 관람석과 열람석의 구조까지도 권장사항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3.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현황 조사

3.1. 1998년 이전 준공한 성당

조사대상 성당 중 1998년 이전에 준공한 것은 아래 표와 같이 모두 4개였다. 각 시설별로 의무 및 권장사항의 반영여부를 ○(공정), △(주의), ×(부정)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아무래도 준공한지 오래된 유성성당과 도룡동 성당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있어 가장 취약한 실태를 드러내고 있었으며 전민동성당이 4개 중 가장 완벽한 수준으로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또한 궁동성당은 준공시 없었던 승강기를 3년 전 추가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1) 현장방문조사일 기준으로, 완벽하진 않더라도 반영이 되어있는 경우(○), 시설 노후화 내지는 기준 미달로 취지상 실효성을 보기 어려운 경우(△), 전혀 반영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경우(×)로 크게 구분하여 체크하였다.

<표 3> 1998년 이전 준공한 성당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기타 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관람석·열람석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 시설
종교 (교회·성당·사찰·기타 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유성성당	○	×	△	○	○	△	△	△	○	○	○	○	-
도룡동성당	○	×	○	○	○	△	△	△	○	○	○	○	-
공동성당	○	×	○	○	○	○	△	△	○	○	○	○	-
전민동성당	○	○	○	○	○	○	○	△	○	○	○	○	-

(1) 유성성당

조사대상 성당 중 최소한의 조건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였다. 주출입구의 경우 경사로는 있었지만 장애인이 혼자 자력으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기에는 경사도가 1/5로 급했고,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이 전혀 없었고 진입로 역시 폭 1.2m로 휠체어가 통과할 수 없을 만큼 협소했으며 여러 물건들도 적재되어 있었다.

<표 4> 유성성당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매개시설			
	-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이 없음	-
내부시설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	승강기가 없음
위생시설			
	장애인을 위한 손잡이가 없음	장애인을 위한 손잡이가 없음	-
기타시설	관람석 열람석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고
			500㎡ 이상

(2) 도룡동성당

준공한지 오래된 만큼 추후에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들

을 추가한 흔적이 보였지만 경사로의 경사도도 1/4 정도로 너무 급했고, 필로티 공간에 추가 신설한 화장실의 경우 초기 준공 당시의 주차구획선과 거의 붙어있고 문턱이 높아 일반인도 출입이 불편할 정도였다.

<표 5> 도룡동성당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매개시설			
	골목 안에 위치하며 긴 경사로 형성	성당 전용 주차장 없음	주출입구 높이차 있음. 경사로 설치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	승강기 없음 램프경사 부적절 세면대
위생시설	대변기	소변기	
	장애인을 위한 손잡이가 없음	장애인을 위한 손잡이가 없음	-
기타시설	관람석 열람석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고
			500㎡ 이상

(3) 공동성당

옥외주차장은 있었으나 장애인을 위해 배려, 구획된 주차장은 없었고, 화장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준공 시 없었던 승강기를 새로 추가하면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장애인을 위한 진입로도 확보하여 장애인 편의시설확충에 대한 노력의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표 6> 공동성당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매개시설			
	-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이 없음	경사가 급함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	인근 아파트와의 거리가 가까움

위생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장애인을 위한 손잡이가 없음	장애인을 위한 손잡이가 없음	-
기타시설	관람석 열람석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고
			500㎡ 이상

(4) 전민동성당

1998년 이전 준공된 성당 중에서 가장 장애인 편의시설이 모범적으로 구비된 성당이였다. 화장실 소변기에 지지할 수 있는 스틸 손잡이가 없는 것만 제외하고는 무엇 하나 나무랄 데 없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표 7> 전민동성당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	-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	-
위생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	장애인을 위한 손잡이가 없음	-
기타시설	관람석 열람석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고
			500㎡ 이상

3.2. 1998년 이후 준공한 성당

조사대상 성당 중 1998년 이후에 준공한 것은 아래 표와 같이 모두 6개였다. 각 시설별로 의무 및 권장사항의 반영여부를 3.1에서와 같이 ○(긍정), △(주의), ×(부정)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현재 관평동성당과 원신흥동성당만이 조립식 패널의 가건물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의 경우는 모두 조적조로 마감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노은동성당의 경우 대지규모도 여유가 있어 후면에

낮은 산을 등지고 있으면서 사제관 및 수녀원이 독립적으로 계획되어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측면 이외에 건축 계획적으로도 바람직한 사례임을 알 수 있었다.

<표 8> 1998년 이후 준공한 성당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출입구(문)	복도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종교 시설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종교 시설	○	○	○	○	○	△	△	○	-
종교 시설	△	×	○	△	○	△	○	○	-
종교 시설	○	○	○	○	○	○	○	○	-
종교 시설	○	×	○	○	○	△	△	○	-
종교 시설	△	×	○	○	○	△	△	○	-
종교 시설	○	×	○	○	○	△	△	○	-

(1) 봉산동 성당

화장실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이 없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아래 표에서와 같이 시설기준을 잘 충족하고 있었다. 특히 가로변에 면한 성당 부설 카페가 인상적이었는데, 인근 주민들 및 신자들의 지역 중심체로서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9> 봉산동성당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	-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	승강기와 계단이 많이 떨어져있음
위생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장애인을 위한 손잡이가 없음	장애인을 위한 손잡이가 없음	-
기타시설	관람석 열람석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고
			500㎡ 이상

(2) 관평동성당

장애인을 위해 별도로 구획된 주차공간이 없었고, 접근로 또한 경계가 불분명하고 바닥 포장상태 또한 불량하였다. 출입구의 경사도는 급하고 승강기도 없어서 장애인을 배려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았다. 주변 공원 등 입지조건이 우수한데 비해서 향후 신축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런지 현재 조사시점에서의 상황은 그다지 양호하지 않았다.

<표 10> 관평동성당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매개시설			
	-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이 없음	-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경사가 급함	-	승강기가 없음
위생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	장애인을 위한 손잡이가 없음	-
기타시설	관람석 열람석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고
			500㎡ 이상

(3) 노은동성당

상기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전후를 통틀어서 가장 장애인을 잘 배려한 성당이였다. 잘 정돈된 단독주택지에 인접해 있으며 야산을 등지고 있는 선형대지 위에 본당동과 사제관이 분리되어 있으며 모범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11> 노은동성당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매개시설			
	-	-	-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	-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위생시설			
	-	-	-
기타시설	관람석 열람석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고
			500㎡ 이상

(4) 진잠성당

점포병용주택 및 근린상가 밀집지역 내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별도로 부설주차장이 있으나 주차구획선이 정확하지 않았고, 화장실에서도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은 미비하였다. 간선도로에서 떨어져 있어 인지성이 약하고 인근에 호남고속도로가 고가 형식으로 지나가고 있어 차량 소음에 취약한 점도 답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표 12> 진잠성당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매개시설			
	-	주차라인 구획이 되어있지 않음	-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	-
위생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장애인을 위한 손잡이가 없음	장애인을 위한 손잡이가 없음	-
기타시설	관람석 열람석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고
			500㎡ 이상

(5) 하기동성당

대지에 꼭 찬 단일형 건물로, 필로티 하부의 기존 주차장까지 카페 및 다용도 집회공간으로 전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실제 주차장이 부족하였고, 화장실 역시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이 없었다. 주출입구의 접근로에도 계단만 있지 경사로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접근권은 후면 필로티 쪽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3> 하기동성당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이 없음	-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	-	-
위생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	-	-	-
기타시설	관람석 열람석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고
			500㎡ 이상
-	-	-	-

위생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	장애인을 위한 손잡이가 없음	장애인을 위한 손잡이가 없음	-
기타시설	관람석 열람석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고
			500㎡ 이상
-	-	-	-

4.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4.1.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이상과 같이 조사대상 10개 성당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현황을 1998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긍정), △(주의), ×(부정)로 평가, 진단하였다. 그 결과를 정량화하여 비교하기 위해 의무사항(긍정 4점, 주의 2점, 부정 0점)과 권장사항(긍정 2점, 주의 1점, 부정 0점)을 차등화하여 표로 재정리 하였다.

(6) 원신흥동성당

도안신도시 진잠천변의 좋은 입지에 있으면서도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주차공간은 없었고, 주출입구에 작은 경사로가 있었지만 준공 후 발생한 단차를 해결하기 위해 덧댄 철판 형식이었고 경사로와 출입문 사이공간이 1m 남짓으로 협소하여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회전반경이 미확보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화장실에도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은 전무했다. 물론 향후 제대로 된 신축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본당이 2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없어 사실상 장애인의 미사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¹²⁾

<표 14> 원신흥동성당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이 없음	-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	-	승강기가 없음

12) 현장답사 후 유전상의 질의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미사 참여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1층 다목적 휴게 공간에 마련된 수신기 화면을 통해 가능하고 봉헌 성가시에도 봉사자들이 봉헌함을 들고 이동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표 15> 유성구 소재 성당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점수표 (■-가건물 형식)

대상시설 (연면적)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기타 시설		점수 계 (30)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열람석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종교시설 (교회·성당·사찰·기원사 등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	
'98년 이전	유성성당(812㎡)	4	0	2	4	2	1	1	1	2	21
	도룡동성당(2,099㎡)	4	0	4	4	2	1	1	1	2	23
	궁동성당(2,354㎡)	4	0	4	4	2	2	1	1	2	24
	전민동성당(3,290㎡)	4	4	4	4	2	2	2	1	2	29
'98년 이후	봉산동성당(1,715㎡)	4	4	4	4	2	2	1	1	2	28
	관평동성당(798㎡)	2	0	4	2	2	1	2	1	2	20
	노은동성당(2,292㎡)	4	4	4	4	2	2	2	2	2	30
	진잠성당(1,936㎡)	4	0	4	4	2	2	1	1	2	24
	하기동성당(1,400㎡)	2	0	4	4	2	2	1	1	2	22
	원신흥동성당(738㎡)	4	0	4	4	2	1	1	1	2	23
점수계 (40/20)	36	12	38	38	20	17	13	11	20	20	-
충족율 (%)	90	30	95	95	100	85	65	55	100	100	100

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1998년 이전에 준공한 성당 중에서는 전민동성당이 30점 만점에 29점으로 가장 우수하였고 유성성당이 21점으로 가장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성당의 준공연도, 즉 건물의 노후화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998년 이후의 경우에는 노은동성당이 30점으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우수한 사례로, 관평동성당이 20점으로 최하위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관평동성당의 경우 임시적인 조립식 건물 상태를 오래 유지해 온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성당의 유형 및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위 표에서 보듯이 한시적 가건물 형식을 취하고 있는 관평동성당과 원신흥동성당이 각각 20점, 23점으로 저조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규모에 있어서는, 가장 큰 전민동성당이 29점, 세 번째인 노은동성당이 30점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규모상 두 번째인 공동성당은 1998년 이전이기 때문에 24점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규모가 1,000m² 미만인 유성성당, 관평동성당, 원신흥동성당은 각각 21점, 20점, 23점의 저조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가건물이면서 규모도 작은 관평동성당과 원신흥동성당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있어서도 가장 저조함을 알 수 있었다.

각 성당별 점수에 의한 비교에 이어 각 편의시설별 충족율을 살펴본 결과, 의무사항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30%로 가장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고, 권장사항에서는 남성 장애인용 소변기가 55%로 가장 낮은 충족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그 구체적 보완 및 개선사항을 그 시급성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의무사항의 충족을 1단계로, 권장사항의 충족을 2단계로, 그리고 끝으로 본 연구과정에선 비록 ○(긍정)으로 평가되었지만 그 설치수준의 완성도가 떨어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3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는 각 분당이나 교구 차원에서 장기 수선계획 수립 시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그 순서를 정해야 할 때 그 우선순위의 위계성을 이해하는 데 참조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6> 유성구 소재 성당 장애인 편의시설의 단계별 개선사항

	1단계	2단계	3단계
유성성당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주출입구 높이차 조정	계단, 화장실 보수	램프의 경사도 조정 엘리베이터 설치
도룡동성당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계단, 화장실 보수	램프의 경사도 조정 엘리베이터 설치
공동성당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화장실 보수	램프의 경사도 조정 화장실 턱 제거
전민동성당	-	소변기 손잡이설치	-
봉산동성당	-	화장실 보수	-
관평동성당	주출입구 접근로 보수 출입구 램프조정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소변기 손잡이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출입문 조정
노은동성당	-	-	-
진잠성당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화장실 보수	-
하기동성당	주출입구 접근로 보수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화장실 보수	-
원신흥동성당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계단, 화장실 보수	엘리베이터 설치 출입문 조정

4.2. 현실적 문제 및 제도적 보완책

현행법상 종교시설로 500m² 이상의 경우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크게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종교시설도 종교집회장 즉, 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 되어 있어 각각의 종교적 차별적 특성에 따른 의식 및 전례의 특수성 및 신자의 행태를 고려한 보다 세분화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못한 상태이다. 의식 및 전례의 특수성의 일례로 미사를 들 수 있는데 미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미사참여의 가능 여부에 중점을 둔 편의시설 설치계획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행태적 관점에서는 지체장애인 뿐 아니라 시각 및 청각 장애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신자 뿐 아니라 성직자 및 다양한 봉사자들의 전례 행위를 고려한 무장애적 공간계획을 위한 지침이 필요할 것이다.¹³⁾

금번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시행된 1998년 이전과 이후로 대별할 때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법 시행 이전에는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모두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실정이었고 추후 부가적인 개·보수의 차원에서 일부 시설들에 한하여 보완되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1998년 이후 준공작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임시 가건물 형식에서는 의무사항 정도만을 겨우 충족한 상태였고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법적인 기준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늘에 있는 신에게로 다가간다는 종교적 상징성으로 인해 과거의 건축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배려보다는 성당건축의 전형성과 위엄에 더 큰 무게와 비중을 두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편의시설이 법규에 따라 설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장애인이 사용하는 데는 여전히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접근성 보장 중심의 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¹⁴⁾

더욱이 성당건축은 그 관리적 특성상 교구 단위를 중심으로 관리국에서 총괄하고 있는 바, 단순한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차원을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도 중장기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통합적 관리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성당건축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현황을 1998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법적 기준의 충족상태를 중심으로 살펴

13) 논문심사 과정(2차)에서 심사위원 중 한 분의 고견에 따라, 앞서 각주6)을 통해 밝힌 분(성당건축 관련전문가)들과의 교신 내용을 정리한 연구노트에서 발췌하여 재정리하였다.

14) 장애인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공공편의시설 접근성 평가, 정지원·김현정,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10년 2월, p.236

보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1998년부터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각 종교의 차별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종교집회장이라는 범주로 같은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성당건축을 포함한 각 종교시설별로 강화 또는 완화된 차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성당건축에 있어서는 미사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미사의 전 과정에 주체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무장애적 공간계획이 되어야 하며 그를 위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¹⁵⁾

둘째, 조사대상 성당 중 1998년 이전에 준공한 경우에는 오래된 역사를 가진 본당일수록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가 열악했고 1998년에 가까운 시기에 준공한 경우에는 그 이후와 비슷한 수준으로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1998년 이후의 경우에는 모든 항목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한 사례도 있었으나 제대로 된 신축 이전의 한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지어진 가건물 형식의 두 경우(관평동성당, 원신흥동성당)에는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법적인 기준은 최소한의 지침일 뿐 더 중요한 것은 교구 차원에서의 중장기적인 유지, 보수에 대한 관리 매뉴얼의 시스템화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단계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편의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대교구와 수원교구는 관리국에서 발행한 건축지침서가 있지만, 아쉽게도 그 세부 내용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다소 간과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가 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라는 일부 지역의 대상 건축물에 한정되어 있지만, 연구의 과정 및 결과가 향후 타 교구 성당건축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2010-2011 한국 천주교 주소록,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0
2. 건축지침서, 천주교서울대교구, 2009
3. 성당건축과 전례, 김중수, 가톨릭출판사 1993
4.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에 대한 연구, 강병근, 교육인적자원부, 2004
5. 20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서울특별시, 2010
6.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 상세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

- 인권익지원과, 2011
7. 한국 천주교 성당건축의 변천과정과 토착화에 관한 연구, 김정신, 대한건축학회지, 1984년 2월
8. 한국성당건축 미사공간의 평면유형에 관한 연구, 한만균·이호진,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90
9.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서 가톨릭 성당의 공공활용성에 관한 연구, 이준혁·임창복,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0
10. 고령자를 위한 교회건축 편의시설 개선방안, 이종희, 김주연,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10년 12월
11. 장애인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공공편의시설 접근성 평가, 정지원·김현정,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10년 2월
12. 휠체어사용자의 성당건물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호근·강병근,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2권 제2호, 2002년 10월 26일
13. 무장애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국내외 편의시설 관련법 비교분석, 윤영삼·강병근·성기창,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논문집 제16권 제2호, 2010년 5월
14. 관련 홈페이지주소
 천주교 대전교구 : www.tjatholic.or.kr
 유성성당 : www.cafe.daum.net/yousungsd
 도룡동성당 : www.doryong.or.kr
 공동성당 : www.kdcatholic.or.kr
 전민동성당 : www.junmin.or.kr
 봉산동성당 : www.cafe.naver.com/djbscom
 관평동성당 : www.tjgp.kr
 노은동성당 : www.cafe.daum.net/yousungsd
 진잠성당 : www.jinjam.org
 하기동성당 : www.cafe.daum.net/hagie
 원신흥동성당 : www.woncatholic.kr

[논문접수 : 2014. 06. 29]
 [1차 심사 : 2014. 07. 25]
 [2차 심사 : 2014. 08. 04]
 [게재확정 : 2014. 08. 08]

15) 각주 6)의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회중석 최전열에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전용석(특수장치 포함), 장애인용 고해설, 제단 및 성가대석의 접근성 보장 관련 편의시설 등을 들 수 있다.